

## 옥외광고물등 표시( [ ]허가·신고 [ ]변경)신청(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	----	----	------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	----------

표시기간	광고내용
------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	-------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또는 제3조의2)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li> <li>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li> <li>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4.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li> <li>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p>	<p>수수료</p> <p>※ 시도 또는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p> <p>※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수료도 별도 징수합니다.</p>
------	--	--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